

## 경운대학교 대학종합만족도조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육수요자 및 대학의 직·간접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학 전 분야의 실태파악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학종합만족도조사의 계획, 시행, 분석, 환류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수요자 및 직·간접 관계자”이라 함은 대학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공공기관, 고교교사, 일반국민 등)을 말한다.
2. “대학종합만족도조사”라 함은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교육수요자 및 대학의 직·간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대학활동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 만족도조사를 통칭하여 말한다.
3. “만족도”라 함은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사항을 제공받은 교육수요자가 조사항목에 대하여 인지 또는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만족도 조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시행부서”라 함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대학종합만족위원회”라 함은 만족도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종합만족도조사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기본계획안이란 각 분야 만족도조사의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시행부서, 조사 영역 및 대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08.]

**제3조(주관 부서)** 대학종합만족도조사는 기획조정처에서 주관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대학종합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 수립
2.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상정
3. 각 조사별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
4. 각 조사결과 분석보고서의 종합 및 시행부서와의 공유
5. 대학종합만족위원회 행정 지원

[전문개정 2019.11.08.]

**제4조(시행부서)** 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시행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 실행계획 수립
2. 조사의 시행

3.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4. 분석보고서 작성 및 타 부서와의 공유
- ②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조사문항 개발
  2. 조사의 방법 및 시기
  3. 기타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③ 조사유형 및 시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유형 및 시행부서를 대학종합만족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2021.10.01.>
1. 대학만족도 : 기획조정처
  2. 교육만족도 : 교육혁신본부
  3. 분야별 만족도 : 관련 부서
- [전문개정 2019.11.08.]

**제5조(대학종합만족위원회)** ① 만족도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대학운영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학종합만족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 교학처장, 인재개발처장, 행정지원처장, 교육혁신본부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회 대표,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0.07.15., 2021.10.01.>
1.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⑤ 대학종합만족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조사유형 및 시행부서의 변경(추가지정 포함)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종합만족도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1.08.]

**제6조(조사 횟수)** 각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종합만족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08.]

**제7조(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대면 조사, 전화 조사,

인터넷(모바일 포함) 조사 및 우편 조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08.]

**제8조(조사결과보고 및 환류)** ① 시행부서는 만족도조사가 종료되면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도출하여 교육과정(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육환경 및 대학의 주요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주관부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대학종합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하여 년1회 대학종합만족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종합만족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부서에 추가적인 개선계획 및 개선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08.]

**제9조(법령 준수)** 주관 및 시행부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08.]

**제10조 삭제** <2019.11.08.>

**제11조 삭제** <2019.11.08.>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전의 「경운대학교 교육만족도조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9.1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